

LG CNS 공정거래 정책

1. 목적

LG CNS는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(이하 '공정거래법'이라 한다)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국내/외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LG CNS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. 공정거래 준수는 LG CNS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이며, LG CNS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LG CNS는 본 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를 추구합니다.

2. 기본원칙

LG CNS의 임·직원은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국내/외 법령 및 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(1) 경쟁 질서의 공정성 유지 :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,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(2)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 존중 :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며,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3) 투명한 거래 관행 :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며,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
3. 적용범위

본 내용은 LG CNS의 모든 임·직원과 LG CNS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.

4.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

(1) 원칙

LG CNS는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. 공정거래법의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쟁사와의 부당한 접촉은 하지 않으며,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실천합니다.

이에 LG CNS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'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, 생산량(투입량), 시장 분할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'를 하지 않습니다.

(2)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

- ① 입찰담합 : 입찰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

* 예시

-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,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
-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
- 낙찰 예정자의 사전 결정하는 행위
-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

- ② 정보교환담합 :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, 생산량, 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

- ③ 가격담합 : 서로 협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

- ④ 시장분할 : 특정지역, 고객 또는 시장을 나누어 경쟁을 피하는 행위

- ⑤ 생산량 제한 : 생산량을 합의하여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
- ⑥ 기타 경쟁제한 행위 :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포함

(3)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

- ① 투명한 거래관행 유지 :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.

- ② 경쟁 촉진 :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, 경쟁사와의 협력은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.

- ③ 교육 및 인식 제고 : 임직원 대상 담합의 위험성과 법적 제재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담합이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.

5. 협력사와의 관계

(1) 원칙

LG CNS는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여 양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,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 공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(2)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유형

- ① 부당한 거래 거절 :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와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것
- ② 거래상 지위 남용 : 거래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업체에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(예 : 대금지급 지연, 판매목표를 강제해 경영에 간섭하는 등의 행위)
- ③ 차별적 취급 :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적용되는 가격이나 거래 조건과는 다른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적용 하는 것으로 특정 거래처에 비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도 이에 포함
- ④ 구속조건부 거래 : 협력업체가 가진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. 협력업체가 우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거래하는 경우 와, 거래지역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포함
- ⑤ 재판매가격 유지 : 대리점, 양판점 등 판매를 담당하는 거래처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우리회사의 제품/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(예 : 거래처간 판매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된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거래처가 회사에 항의하여 가격을 낮게 책정한 거래처에게 회사가 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)
- ⑥ 거래강제 : '끼워팔기'나 사원판매의 경우처럼, 거래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거래 관행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강요하는 것
- ⑦ 부당염매 및 부당고가매입 :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통상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
- ⑧ 부당한 지원행위 : 특정 기업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
- ⑨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 :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

(3)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

-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, 협력회사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,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
- ②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조건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동으로 고객 유치를 위

한 마케팅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- ③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으며, 거래 계약 조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니다.
- ④ 특정 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이나 혜택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.
- ⑤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의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합니다.

6. 임직원의 책임

- (1) 법령 준수 :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, 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.
- (2) 교육이수 :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정거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,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유지합니다.
- (3) 내부 신고 : 위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에 신고해야 합니다.